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「경부선 가도교 확장사업」 CCTV 설치에 대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05일

영 동 군 수

- 1. 사 업 명 :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
- 2. 행정예고 기간 : 2022. 12. 05. ~ 12. 25.(20일간)
- 3. 의견제출 기간 : 2022. 12. 05. ~ 12. 25.(20일간)
- 4. 공고방법 : 영동군청 홈페이지

5. 관련근거

- 가.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나.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- 다.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

6. 설치예정 장소

연번	설 치 장 소	수량(대)	비고
1	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7-4, 58-7번지	2	

7. 의견제출

가.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,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영동군 도시건축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팩스(043-740-3369)

다. 제출기한 : 2022. 12. 25까지

라. 보내실 곳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, 영동군청 도시건축과

마. 문 의 처 : 영동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(043-740-3374)

바.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붙임 의견서 1부. 끝.

의 견 제 출 서

※ 이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아래의 뉴의사양	을 얽고 직장에게 미답	니다.				
의견제출인	성명					
	주소			전화번호		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	제목				
	당사자	성명(명칭)				
		주소				
			(전화번호	Σ:)
	의 견					
	기 타					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						
				2022년	월	일
		의견제출인		(人-	명 또는	인)
영 동 군 수 귀하						

유의 사항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